

July 07,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42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0. 6. 29. ~ 7. 3.) -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 및 법규” 중 기업이나 협회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여 소개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과기부] 2021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발표

2020. 6. 26. 내년도 국가연구 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함. 주요 내용으로 ① 2020년(19.7조원) 보다 9.7% 증가한 21.6조원 규모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에 중점 투자, ② 제조업, 의료업, 건설업, 농어업 등 산업 전분야의 데이터·인공지능·5G+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 ③ 블록체인 기술, 현존 AI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포스트 딥러닝 기술 등 차세대 ICT 기술 확보 관련 투자 확대 등이 있음

[\[참고자료\] 2021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참고자료\] 2021 정부 R&D 배분·조정안 주요특징](#)



[기재부] 「관세법」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0. 6. 30. 관세 과세가격 결정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관세 과세체계 마련을 위한 「관세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 발생시 낮은 해상운임으로 관세 부과하는 등 항공운임 관세특례 요건 정비, ② 운임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대상 명확화, ③ 보세구역내 거래 석유의 과세가격 산정시 국내발생 비용 공제 명시 등이 있음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율]

[\[참고자료\] 관세사법 시행령 보도참고자료](#)



[기재부·과기부]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 발표

2020. 7. 2.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생명연구자원 고도화 전략을 수립함. 주요 내용으로 ① 국가생명연구자원 수집·관리 표준지침을 제정해 R&D 사업 관리 및 바이오 연구 데이터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해 국가 표준 마련, ② 바이오 R&D사업에서 생산되는 임상연구 데이터를 수집·제공하고 안전·윤리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③ 자원은행 274개를 구조조정하여 14개 분야별 소재 클러스터 조성 등이 있음

[\[참고자료\]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 6. 30.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됨. 주요 내용으로 ①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② 펀드 운용·설정 및 보고·공시 규제 정비 등을 통해 펀드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경감, ③ 클라우드펀딩 대상기업 확대(창업→중소기업) 및 클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사후 경영자문 허용 등을 통한 클라우드펀딩 활성화 등이 있음

[참고자료]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2020. 6. 30.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함. 주요 내용으로 ① 대리점거래의요건인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 등에 대한 각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 ②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 규정, ③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거래내용의 불공정성과 무관하게) 대리점의 신고, 조사협조 등 행위와 보복조치로서 이루어지는 행위 간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 등이 있음

[참고자료]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지침 제정



[국토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확정

2020. 7. 1.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함. 주요 내용으로 ① 조선, 화학, 철강 등 기존 남해안의 주력산업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② 광역도로·철도망 구축, 남해안권 국도·고속도로 개설 등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연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 ③ 섬진강 유역의 자연, 역사, 예술 자원 등을 적극 활용하고, 남해안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권역의 동반성장 도모 등이 있음

[참고자료] 향후 10년 새로운 청사진 담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확정



[산자부1]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2020. 7. 1. 수소경제 기본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수소 활용 이동수단(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에 ‘수소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 추진, ② 340억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 등을 통해 신규 기업의 수소시장진입 촉진, ③ 제주도 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다양한 청정 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

년 100MW급 청정 수소 양산 체제 구축 등이 있음

[참고자료] 수소경제 선도국가를 위한 컨트롤타워 가동



[참고자료]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안건



[산자부2] 뿌리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 확정

2020. 7. 2.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금속소재 중심의 6대 공정기술에서 벗어나 소재는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등 6개로 늘리고 뿌리기술은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로봇 등 14개로 확대하며 뿌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범정부적으로 지원, ② 뿌리기업의 현장애로 등을 인근 대학 소부장 기술지원단이 해소해주는 산학협력 R&D 지원 신설('20년 226억원), ③ 스마트화 비율이 높은 뿌리업종을 제조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데이터 규격 등의 표준화 구축 등이 있음

[참고자료] 뿌리산업 범위 10년만에 전면 개편



*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제도 및 법규 사항(중요사항 일부 발췌)

소관 부처	주요 제도	내용
금융위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활성화	- 비식별화 조치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 가능 - 빅데이터 확보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데이터 거래소 개설,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예정) 등
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 의무화 등
과기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	- 공인·사설 인증서 구별을 폐지하여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 부여 -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서비스 및 '액티브X' 설치 필요가 없는 편리한 인증서비스 활성화 등

행안부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 정보보호제도 개선	•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 •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 통합 등
환경부	폐수처리업 관리제도 강화	•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폐수처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폐수처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과징금 기준을 현재 최대 2억원→매출액 으로 변경 등
과기부	‘SW사업 선진화’ 제 고위한 SW진흥법 전면 시행	• SW사업자가 지적재산권 행사를 위해 SW산출물의 반출 요청시 국가기관 등의 승인을 원칙적으로 의무화 •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 도입 등
산자부	전자자유무역지역 경쟁 력강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권자로 하여금 소관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등
산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법령 개정	• 정부 보급사업 설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후관리 의무사항, 보고체계 등 세부사항 규정 • 공유재산 내에 영구축조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토록 절차 간소화 등
산자부	재생에너지 3020 이 행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법령 개정	•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기한(90일)의 단순 경과로 인한 공급인증서 소멸을 방지하여 사업자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 •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분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30년까지 40%로 상향하고, 의무의행 여부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중기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새로운 투자방식(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으로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의 투자를 쉽고 간편하게 함 • 창업기획자도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제한 없이 유치할 수 있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함 등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관보19783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및 선정된 서비스를 등록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1항, 안 제9조의3, 안 제9조의4, 안 제9조의5 신설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인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벤처캐피탈을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두지 못하여 벤처캐피탈을 통한 대기업의 벤처회사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되, 이들 회사가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대하여 투자 또는 용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도모하면서도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제5호 및 안 제10조의4 신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4인)]

온라인시장에서 1천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대다수 상위권 사이버몰 운영자들은 직접판매방식을 취하기보다는 주로 입점사업자와 소비자의 전자상거래를 매개함으로써 수수료와 광고료를 징수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어, 그 사업방식이 대규모 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인 사이버몰 운영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일적으로 규제하고,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명확히 하여 사이버몰 입점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2조의2제2항 신설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기술자료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현행법에 도입하여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발생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3인)]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10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배상한도를 확대하고,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의 효과적인 손해배상을 위해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과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발생한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등)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현행법의 주무부처를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관련된 사무를 이관하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최대 2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3조의3 등)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의원 등 28인)]

백화점과 면세점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며, 추석과 설날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게 하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함. 이와 더불어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상품공급점이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준대규모점포로 포함해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규제를 받게 하여 주변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안 제12조의2 등)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4인)]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이 외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대규모점포등의 입지 선정과 건축단계 이후 등록단계에서 개설과 관련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등록 제도의 특성상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 13조의3, 안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 신설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위원 본인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임원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개선하고, 감사위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명시하는 등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직무 전념성을 강화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총액, 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안 제17조제6항 신설 등)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은행의 주주가 은행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 및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이 비업무용 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은행의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전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5제3항, 제39조, 제52조 및 제62조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2인)]

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등에 의한 촬영이 증대하면서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2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게임 개발에 대한 창작 의지를 고취하고, 게임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상시고용인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수료 면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업체들이 보다 자유롭게 게임을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총괄·관리하는 전담기관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또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호 단서·제14조의2·제14조의3 신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21인)]

최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이익 공유체계를 도입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주민 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목받고 있음.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으며 협동조합 등을 통한 주민참여 모델이 일반화 되어 있음.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지분을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해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있고, 미국 워싱턴 주에서도 태양광 설비 프로젝트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요건을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전문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가 9명의 위원 중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3인)]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선진국에서는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 식량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에서도 식량 폐기 감소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식량자급률이 낮은 일본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더불어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여 식품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호다목)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Chong-Ah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